

「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」
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2021. 5. 10.

식품의약품안전처

「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-25호, 2020. 4. 22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10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「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선박에 별크로 선적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사전수입신고 시 보세창고 반입 전에 검체채취 및 검사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부적합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항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,

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의 검사항목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목록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선박의 별크형태로 들어오는 농산물의 사전수입신고 처리절차 개

선(안 제3조, 제6조)

- 1) 선박의 벌크형태 농산물에 대해 보세구역 등에 반입전 현장검사, 정밀검사,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
- 2) 선박의 벌크형태 농산물을 둘 이상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공동검체로 취급하도록 함

나.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잔류농약 시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(안 제8조)
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다중농약 다성분 시험법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(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,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26호, 2021.3.25.)

다. 부적합 후 재수입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부적합 항목 검사반영 (안 제8조)

부적합 후 재수입되어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부적합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

라.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65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69종으로 조정함 (안 별표3)

- 1)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에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8종을 추가하고,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년간 평균 10회 미만인 농약 4종을 제외하고자 함

- 2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잔류농약 시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다성분 검사 대상 농약의 검사항목을 개정하고자 함

마.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범위 조정(안 별표 4)

- 1) 5년간 정밀검사 결과, 부적합이력이 없는 독일산 과실주 등 가공식품 3개 품목·국가를 인정범위에 추가하고자 함
- 2)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캔디류(젤리) 1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

3. 의견 제출

「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| 개 정(안) | 수 정(안) | 수 정 사유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|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jwj1223@korea.kr
- 2) 주소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
- 3) 팩스 : 043-719-2200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eo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(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, 전화 043-719-221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(안)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 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「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25호, 2020. 4. 2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1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실제 도착일 전날 신고한 것으로 보아”를 “보세구역 등에서의 반입전까지”로, “보세구역등에서의 입고”를 “반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벌크 농산물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등에서의 반입전에 현장검사,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수입신고확인증은 수입검사가 완료되고 보세구역 등에서의 반입이 완료된 경우 교부하여야 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벌크 농산물을 둘 이상의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검체를 공동검체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중 “다중농약다성분 분석법의 주)7 및 주)8)”을 “다성분 시험법의 바.1).바) 및 바.2).사)”로 한다.

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및 대상 중 별표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1항의 중점검사항목에 부적합 검사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10조제2항 본문 중 “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”을 “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농·임·수산물”을 “농·임산물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: 69종

| 연번 | 농약명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다이아지논(Diazinon) |
| 2 | 디디티(DDT) |
| 3 | 디코폴(Dicofol) |
| 4 | 디클로르보스(Dichlorvos) |
| 5 | 말라티온(Malathion) |
| 6 | 메토밀(Methomyl) |
| 7 | 메톡시페노자이드(Methoxyfenozide) |
| 8 | 메티다티온(Methidathion) |
| 9 | 보스칼리드(Boscalid) |
| 10 | 비에치시(BHC) |
| 11 | 비펜트린(Bifenthrin) |
| 12 | 사이퍼메트린(Cypermethrin) |
| 13 | 사이프로디닐(Cyprodinil) |
| 14 | 사이할로트린(Cyhalothrin) |
| 15 | 아세타미프리트(Acetamiprid) |
| 16 | 아зок시스트로빈(Azoxystrobin) |

| 연번 | 농약명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7 | 아트라진(Atrazine) |
| 18 | 에티온(Ethion) |
| 19 | 엔도설판(Endosulfan) |
| 20 | 이마잘릴(Imazalil) |
| 21 | 이프로디온(Iprodione) |
| 22 | 카바릴(Carbaryl) |
| 23 | 카보퓨란(Carbofuran) |
| 24 | 클로로탈로닐(Chlorothalonil) |
| 25 | 클로르피리포스(Chlorpyrifos) |
| 26 | 클로르페나피르(Chlorfenapyr) |
| 27 | 트리아디메폰(Triadimefon) |
| 28 | 트리아조포스(Triazophos) |
| 29 | 트리플루무론(Triflumuron) |
| 30 | 티아메톡삼(Thiamethoxam) |
| 31 | 파클로부트라졸(Paclobutrazol) |
| 32 | 퍼메트린(Permethrin) |
| 33 | 페니트로티온(Fenitrothion : MEP) |
| 34 | 펜발러레이트(Fenvalerate) |
| 35 | 펜토에이트(Phenthoate) |
| 36 | 펜프로파트린(Fenpropathrin) |
| 37 | 프로사이미돈(Procymidone) |
| 38 | 프로클로라즈(Prochloraz) |
| 39 | 프로페노포스(Profenofos) |
| 40 | 플루벤디아마이드(Flubendiamide) |
| 41 | 피라클로스트로빈(Pyraclostrobin) |
| 42 | 피리메타닐(Pyrimethanil) |
| 43 | 피리미포스메틸(Pirimiphos-methyl) |
| 44 | 플루디옥소닐(Fludioxonil) |
| 45 | 디메토에이트(Dimethoate) |
| 46 | 클로란트라닐리프롤(Chlorantraniliprole) |
| 47 | 클로로벤주론(Chlorobenzuron) |
| 48 | 피프로닐(Fipronil) |
| 49 | 루페뉴론(Lufenuron) |
| 50 | 테부코나졸(Tebuconazole) |

| 연번 | 농약명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1 | 이육-디아이피엔(2,6-Diisopropyl-naphthalene) |
| 52 | 클로르피리포스-메틸(Chlorpyrifos-methyl) |
| 53 | 카벤다짐(Carbendazim) |
| 54 | 티아벤다졸(Thiabendazole) |
| 55 | 클로티아니딘(Clothianidin) |
| 56 | 디페노코나졸(Difenoconazole) |
| 57 | 피리다벤(Pyridaben) |
| 58 | 이미다클로프리트(Imidacloprid) |
| 59 | 피페로닐부톡사이드(Piperonylbutoxide) |
| 60 | 톨펜피라드(Tolfenpyrad) |
| 61 | 디플루벤주론(Diflubenzuron) |
| 62 | 델타메트린(Deltamethrin) |
| 63 | 메티오카브(Methiocarb) |
| 64 | 뷰타클로르(Butachlor) |
| 65 | 아이소프로카브(Isoprocarb) |
| 66 | 플루트리아폴(Flutriafol) |
| 67 | 피리프록시펜(Pyriproxyfen) |
| 68 | 디니코나졸(Diniconazole) |
| 69 | 트리아디메놀(Triadimenol) |

2. 단성분 검사 대상 :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제8. 7.1.3 단성분 시험법에 따른 농약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5 제6호나목 중 “제6.검체”를 “제7.검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 제2호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3 제1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제2호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한(선적일 기준) 식품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검사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4]

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

I. 농·임산물

| 연번 | 대상식품 | 국가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강남콩 | 중국 |
| 2 | 기장 | 중국 |
| 3 | 밀 | 미국, 호주 |
| 4 | 팥 | 중국 |
| 5 | 감 | 중국 |
| 6 | 레몬 | 미국 |
| 7 | 오렌지 | 미국, 칠레 |
| 8 | 포도 | 미국, 칠레 |
| 9 | 커피 | 인도네시아, 콜롬비아, 브라질, 코스타리카, 과테말라 |
| 10 | 후추 | 말레이시아 |
| 11 | 동부 | 미얀마 |
| 12 | 라이치 | 중국 |
| 13 | 망고 | 태국, 필리핀 |
| 14 | 호박 | 뉴질랜드, 중국 |
| 15 | 체리 | 미국 |
| 16 | 브로콜리 | 중국 |
| 17 | 월귤(블루베리)/열매 | 칠레 |
| 18 | 우엉 | 중국 |

II. 가공식품

| 연번 | 대상식품 | 국가 |
|----|---------|--|
| 1 | 초콜릿 | 네덜란드, 스위스 |
| 2 | 밀크초콜릿 | 벨기에, 프랑스, 네덜란드, 미국, 일본 |
| 3 | 연육 | 중국, 태국, 미국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인도 |
| 4 | 볶은커피 | 미국, 영국, 일본, 독일, 베트남, 스위스, 이탈리아, 호주, 말레이시아, 스페인 |
| 5 | 인스턴트커피 | 미국, 일본 |
| 6 | 위스키 | 영국, 프랑스, 미국 |
| 7 | 영양강화밀가루 | 캐나다 |
| 8 | 텍스트린 | 일본 |
| 9 | 액상커피 | 미국 |
| 10 | 조제커피 | 캐나다 |
| 11 | 준초콜릿 | 미국, 일본, 프랑스 |
| 12 | 초콜릿가공품 | 말레이시아, 일본, 캐나다, 호주, 벨기에 |
| 13 | 코코아분말 | 네덜란드 |
| 14 | 과실주 | 호주, 아르헨티나, 남아프리카공화국, 독일 |
| 15 | 맥주 | 독일, 아일랜드, 영국, 중국, 체코, 필리핀 |
| 16 | 당절임 | 미국 |
| 17 | 개량메주 | 중국 |
| 18 | 텍스트린 | 중국 |
| 19 | 물엿 | 중국 |

※ 제4호의 볶은커피는 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으로서 착향을 목적으로 향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.

